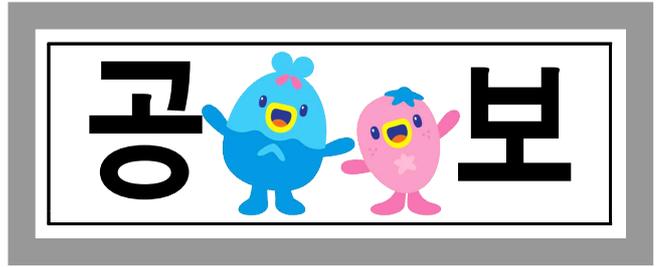


# 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1529호 2024년 4월 26일(금)

## 입법예고

-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..... 2
- 속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..... 6

발행 : 시 민 소 통 담 당 관 (전화 : 639-3750, FAX : 639-2799)

##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4년 4월 26일

## 속 초 시 장

### 1. 자치법규명 :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2. 제정이유

상위 법령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과의 불일치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기부채납된 재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의 기산일을 ‘기부채납일’에서

‘사용허가일’ 로 수정(안 제17조)

#### 4. 자치법규안 : 붙임

#### 5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 
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(참조 : 회계과장)에게  
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1)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 
전화번호 등

나. 의견제출 및 문의처

- 1) 주소 : 우)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, 속초시청 회계과(공유재산관리팀)
- 2) 연락처 : 전화 033-639-2177, FAX 033-639-2396
- 3) 전자문서 : ssil@korea.kr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전자문서, 직접방문 등

#### 6. 기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회계과 공유재산관리팀(033-639-2177)으로 문의하  
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 중 “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”를 “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7조(무상사용 기간)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르며, 그 기산일은 <u>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 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사용 시 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7조(무상사용 기간) ----- ----- ----- <u>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.</u></p>

## 속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속초시 청년 기본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4년 4월 25일

### 속 초 시 장

#### 1. 자치법규명 : 속초시 청년 기본 조례

#### 2. 개정이유

- 청년인구 유출 대응 및 청년지원정책 확대를 위한 청년 연령범위를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상향하여 청년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정착에 이바지하고,
- 청년정책 사업의 행·재정적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내실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- 가. 청년연령 범위의 확대(안 제2조 개정)
  -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⇨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
- 나. 기본계획 수립 등(안 제5조 개정)
- 다. 청년정책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·재정적 지원의 구체적 근거마련 및 정비

- 청년정책 사업 추진 및 지원 등(안 제14조제1항각호 개정)
-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(안 제14조1항제1호 신설)
-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(안 제14조1항제2호 신설)
-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창업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(안 제14조1항제3호 신설)
-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(안 제14조1항제4호 신설)
- 청년의 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(안 제14조1항제5호 신설)
-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(안 제14조1항제6호 신설)
- 청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(안 제14조1항제7호 신설)

#### 4. 자치법규안 : 붙임

#### 5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(참조 : 지역경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·반대 여부와 그 사유)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 등

나.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

- 주 소 : 우)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, 속초시청 지역경제과
- 연락처 : 전화 033-639-2328, 팩스 033-639-2465, 전자문서 kk08@korea.kr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팩스, 전화, 전자문서, 직접방문 등

## 6. 기 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정책팀(☎033-639-2328)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속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속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본문 중 “39세”를 “45세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사회적 차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

가. 경제·사회·교육·문화·복지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확대, 학습 및 경험 축적 지원

나.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활동 촉진 및 지원

다. 청년의 날 행사 및 청년주간 운영지원

2.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

가. 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분야의 청년 역량 개발

나.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

다. 취업 애로 및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

라. 청년의 취·창업 활동 촉진을 위한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

3.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창업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

가.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

나.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차별 개선 및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

다. 청년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 및 안정적 창업 기반 조성

4.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

가. 주거환경 개선, 이사비용,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

나. 결혼, 출산, 보육 등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

다.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지원

라.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 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

5.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

가. 청년 문화 공간 및 사회문화적 기반 조성

- 나. 청년 문화예술의 교류 등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
- 다. 청년 문화예술 기반 구축 및 공간 조성
- 6.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
  - 가.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
  - 나.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
  - 다.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아카데미 운영
- 7. 청년의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
  - 가. 청년의 건강검진
  - 나. 자살, 우울증, 가족 갈등, 심리상담 등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 사업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“청년”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중 속초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를 가지거나 생활근거지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,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대상을 다르게 할 수 있다.</p> <p>2. ~ 5. (생략)</p> <p>제5조(기본계획 수립 등)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속초시 청년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</p> <p><u>&lt;단서 신설&gt;</u>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제14조(청년정책 사업 추진 및 지원 등)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(이 조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45세 ----- -----. ----- -----.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기본계획 수립 등) ① --- ----- ----- ----- -----. <u>다만, 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사회적 차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4조(청년정책 사업 추진 및 지원 등) ① ----- -----</p>

례에서 “추진사업”이라 한다)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「청년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17조부터 제24조까지의 시책에 관한 사업

2. 청년의 활동지원 및 참여확대를 위한 사업

3. 청년의 결혼·출산·보육을 위한 사업

-----  
-.

1.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

가. 경제·사회·교육·문화·복지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확대, 학습 및 경험 축적 지원

나.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활동 촉진 및 지원

다. 청년의 날 행사 및 청년주간 운영지원

2.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

가. 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분야의 청년 역량 개발

나.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

다. 취업 애로 및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

라. 청년의 취·창업 활동 촉진을 위한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

3.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창업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

가.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

4. 청년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

5. 청년의 날 행사

및 취업 지원

나.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차별 개선 및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

다. 청년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 및 안정적 창업 기반 조성

4.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

가. 주거환경 개선, 이사비용,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

나. 결혼, 출산, 보육 등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

다.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지원

라.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 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

5.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

가. 청년 문화 공간 및 사회문화적 기반 조성

나. 청년 문화예술의 교류 등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

다. 청년 문화예술 기반 구축 및 공간 조성

<신 설>

<신 설>

6. (생 략)

② (생 략)

6.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

가.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

나.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

다.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아카데미 운영

7. 청년의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

가. 청년의 건강검진

나. 자살, 우울증, 가족 갈등, 심리상담 등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 사업

8. (현행 제6호와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